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2. 주요골자

- 제10조(수당 등)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 제2항에 자문위원회에 특정 자문과제의 부여 시 반대급부적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3.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1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서구지역발전 자문위원회에 특정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란 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사 참여 통로로써의 기능과 전문성을 제공하여 행정의 타당성, 능률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나 소관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게 특정한 자문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조사·연구 기능의 수행과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경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에게 자문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도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만 한정하여 논할 것이 아니라 서구청 산하에 있는 각종위원회와 관련하여 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어떠한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자문과제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고, 부여된 자문과제에 대한 위원의 직무(예 : 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언급도 없는 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본안은 제9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었으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처리하기로 하여 부결시켰던 안입니다.